

Samil Commentary

June 14, 2019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증권거래세 6 월부터 인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 세제혜택 확대 계획

지능적 역외탈세 협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최신 세무예규판례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함.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진출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함.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정사업장: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현행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 시 현지국에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개정함.
-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인하함. (현행 15%→5%)
- 주식양도소득: 현재는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및 지분율 25% 이상인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함.
- 독립적 인적용역: 현재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함. 개정 협정에서는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독립적 인적용역을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함.

-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 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증권거래세 6 월부터 인하

정부는 2019년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이번 개정으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어 결제일 기준으로 2019년 6월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2019년 5월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시행함.

- 코스피: 0.15% → 0.10%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 코스닥: 0.30% → 0.25%
- 코넥스: 0.30% → 0.10%
- K-OTC(장외주식 증개): 0.30% → 0.25%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임. 한편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20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 세제혜택 확대 계획

정부는 5월 22일(수)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함.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세제 및 회계기준 등을 개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 확대(기획재정부) 및 산업 특성에 맞는 회계·공시·상장기준 마련(금융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신약에서 바이오베터까지 확대(2020년)할 예정임. 이를 위해 2019년 중에 식약처는 바이오베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임.
-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현재 173개 기술)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예: 5년→10년)을 2019년 중에 검토할 예정임.
-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투자(2019년 세액공제 일몰 예정)에 대한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예를 들어 글로벌 GMP 시설 중 첨단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제약·바이오 기업이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 바이오기업 가치평가 기준 마련으로 기관투자자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R&D역량을 반영한 상장 심사기준을 도입할 예정임.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발표됨. 지난해 신약 기술 수출은 5.3 조원(전년 대비 4 배),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 수출은 144 억 달러(전년 대비 19% 증가)에 달해 사업화의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 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기업 창출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임.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19년 5월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20명), 내국법인(63개)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21개)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04건)하였다고 밝힘. 이번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주로 선정함. 또한,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함.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 해외현지법인과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고 있음.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임.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하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최신 세무예규판례

[국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의 과점주주(이하 "제 1 차 과점주주")인 법인이 제 2 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제 1 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제 2 차 과점주주")가 또다시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임.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 규정의 취지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이익은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 규정은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 3 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 규정의 취지 및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2 차 과점주주에게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 2018 두 36110, 2019. 5. 16.)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를 넘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할 수 없다고 최초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이번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의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서면-2018-법령해석국조-2060, 2018. 12. 27. 등),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 5. 2.)

다만, 이번 질의회신에서 기획재정부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Contacts

국제조세	내국세	이전가격 & 국제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금융세무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중소기업 · 스타트업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정혜원 709-0990 hyewon.choi@pwc.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ang-keun.song@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709-0692 thomas.chanu.chung@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상속증여&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이영모 3781-3140 youngmo.lee@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owell@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삼일회계법인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